

# 한경국립대학교 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 공개채용 전형지침

제정 2023. 3. 1.

개정 2023. 3.30.

개정 2023. 5.16.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 공개채용을 위한 기준과 심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란 산학협력을 통하여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전임교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이하 “산학협력중점교수”라 한다)의 공개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4조(자격)** 공개채용 지원자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공통 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따른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 영어강의가 가능한 사람

### 2. 소속별 자격 <개정 2023. 3.30.>

구분	학부(전공) 및 대학원	산학협력단
학위	기준일 현재 박사학위 소지	기준일 현재 석사학위 이상 소지
산업체 경력	기준일 현재 채용분야 관련 <b>10년 이상</b>	기준일 현재 민간산업체 임원 또는 공공단체·연구기관 등의 임원(책임연구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국장급 이상)으로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b>20년 이상</b>

구분	학부(전공) 및 대학원	산학협력단
		※ 단,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15년 이상인 자도 지원 가능. 다만 이 경우 석·박사 재학기간은 경력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임원 또는 책임연구원 또는 국장급 이상 경력이 없는 경우 20년(또는 15년) 이상이라도 제외
연구 실적물	1) 기준일 현재 최근 3년 이내 발표한 연구실적물(석·박사 논문 제외) 200% 이상 ※ 연구실적물 : 논문,저서,특허,산학협력연구 보고서 ※ 논문의 경우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이하 “주저자”라 함) 참여 논문만 인정 2) 1)번 연구실적물 200% 중에 특허 또는 산학협력 연구보고서 실적의 합이 50% 이상 포함	제한 없음

3. 제2호의 “산업체 경력”이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2조 및 제4조제1호, 제3호 내지 제4호까지의 경력과 대학교원(비상근 교원제외, 최대5년까지 인정)을 말하되, 산학협력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채용예정인 사람이 박사 학위를 소지한 경우 3년(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을 산업체 경력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3. 3.30.>

4. 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 및 인정률은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한다.

5. 공개채용 지원자에 대한 각종 기준일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제5조(임무)**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실무중심 강의(주당 6시간), 기업가정신 교육,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2. 연구사업 기획, R&D 참여,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3. 학생취업 연계, 창업 강좌 운영, 창업동아리 지원
4.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기술·경영자문, 산학협력 정책 기획
5. 그 밖에 산학협력 관련 업무

**제6조(제출서류)** ① 공개채용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산학협력중점교수 공개채용 지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임용 후 산학협력 활동계획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4. 기준일 현재 최근 5년 이내 산·학·연·관 협력 연구실적서(이하 “산학협력 실적서”라 한다) 1부 (학부(전공) 및 대학원 소속 교원은 별지 제4-1호 서식, 산학협력단 소속 교원은 별지 제4-2호 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5. 기준일 현재 최근 3년 이내 발표된 연구실적물 관련 서류 (학부(전공) 지원자 필수, 산학협력단 지원자는 해당하는 경우 ‘가’목 및 ‘나’목만 제출)
  - 가. 연구실적물 목록 1부 (별지 제5호 서식)
  - 나. 연구실적물 요약서(국문 또는 영문으로만 작성) 각 1부 (별지 제6호 서식)
  - 다. 최종학위 논문 각 2부
  - 라. ‘가’목에 작성한 연구실적물 각 2부
  - 마. SCIE, SSCI, A&HCI, SCOPUS 학술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바. 온라인 출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종이 출판 전에 온라인상으로 출판되어 ‘Available online’ 또는 ‘Published online’ 표시가 있는 논문으로 ‘DOI’ 및 ‘권’, ‘호’(또는 발표 년, 월)가 모두 표기된 논문만 인정)
  - 사. 연구실적물 상 주저자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주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학술지를 발간한 기관에서 주저자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한 확인서 등) 각 1부
  - 아. 논문상에 발표시기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연구실적의 발표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학력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학사, 석사, 박사)
7. 경력증명서 각 1부 (지원서에 기재한 경력,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8. 본인이 원본과 틀림없음을 확인·서명한 한글 번역문 각 1부(영어 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9.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6호까지 작성한 파일(반드시 한글 파일로 작성)

② 제1항제5호의 연구실적물은 원본 또는 별쇄본으로 제출하며, 별쇄본으로 제출 시 원본을 지참하거나, 원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구실적물 원본 표지 및 목차 복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장 심사위원회

**제7조(연구실적심사위원회)** ① 지원자의 전공과 채용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지원자의 연구·산학협력 실적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연구실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실적심사위원회 위원은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소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학부(전공) 및 대학원 소속 : 학부(전공)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심사위원 4인 및 총장이 위촉하는 외부 심사위원 2인
2. 산학협력단 소속 : 산학협력단장, 총장이 임명하는 전임교원 3인 및 총장이 위촉하는 외부 심사위원 2인
3. 제1호의 학부(전공) 전임교원 중 적임자가 4인 미만인 경우에는 다른 학부(전공) 유사전공 전임교원 또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4. 외부 심사위원은 전문가 POOL 또는 한국연구재단 연구인력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여 구성된 후보군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제8조(공개강의심사위원회)** ① 지원자의 강의능력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개강의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개강의심사위원회 위원은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소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학부(전공) 소속 : 산학협력단장,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 6인(교수채용지원위원 1인 및 학부(전공) 소속 전임교원 5인)
2. 대학원 소속 : 산학협력단장,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 6인(교수채용지원위원 1인 및 해당 교학부장, 전공주임교수,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등 5인)
3. 산학협력단 소속 : 산학협력단장, 총장이 임명하는 전임교원 5인 및

총장이 위촉하는 외부 심사위원 1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부(전공) 또는 대학원 전임교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채용분야와 유사분야 전임교원을 임명하거나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제9조(면접심사위원회)** ① 지원자의 교육자로서의 자질, 품성, 산학협력 기여도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면접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개강의심사위원회 위원은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소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학부(전공) 소속 : 총장, 해당 학부장(또는 전공주임교수),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총장이 임명하는 전임교원 2인(해당 학부(전공) 전임교원 1인 이상 포함)
2. 대학원 소속 : 총장, 해당 대학원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해당 교학부장(또는 해당 전공주임교수) 및 총장이 임명하는 전임교원 1인
3. 산학협력단 소속 : 총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및 총장이 임명하는 전임교원 3인

**제10조(심사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각 전형별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심사에서 제척된다.<개정 2023. 5.16.>

1. 지원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개정 2023. 5.16.>
2. 지원자의 석·박사 논문의 지도교수이거나 심사 대상 연구실적물의 공동연구자인 경우<개정 2023. 5.16.>
3. 국외 연구년을 수행하고 있는 자
4. 그 밖에 심사위원이 지원자와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3. 5.16.>

② 심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자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 지원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사위원에게 공정한 심

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의 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대학의 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신설 2023. 5.16.>

### 제3장 심사절차 및 방법

#### 제1절 학부(전공) 및 대학원 소속 채용 심사절차 및 방법

제11조(심사절차) ① 학부(전공) 및 대학원 소속 산학협력중점교수 공개 채용을 위한 심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 전형 : 서류심사
2. 2차 전형 : 전공심사, 경력심사, 연구실적 심사, 산학협력실적심사
3. 3차 전형 : 영어능력심사, 공개강의 심사 및 면접 심사

② 심사단계별 전형요소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구분	1차전형	2차전형				3차전형			총 배점
	서류 심사	전공 심사	경력심 사	연구실적물 심사	산학협력 실적심사	영어 능력 심사	공개강의심사	면접심사	
배점	적부	적부	적부	20	20	Pass/Fail	25	35	100
심사	교무처장	연구실적심사위원회				별도위 원	공개강의 심사위원회	면접심사위 원회	

제12조(서류심사) ① 서류심사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서류심사표에 따라 서류 완비 여부, 교수자격 여부, 연구실적 및 경력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한다.

② 서류심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자는 2차전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서류심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지원자가 2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향후 전형을 중단한다.

제13조(전공심사) ① 전공심사는 1차 전형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학위과정, 학위논문, 경력의 채용분야와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로 별지 제8호 서식의 전공심사표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만을

심사한다.

② 제1항의 전공심사는 점수로 기재하며, 합계점수가 6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전공 '적합'으로 판정하며, 그 미만인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③ 전공심사 결과 연구실적심사위원회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이 '적합'으로 판정해야 지원자의 전공이 채용분야와 일치한 것으로 본다.

④ 기준일 현재 2년 이내에 학부(전공)이 동일분야(채용분야·지원자격 등 채용기준 모두 동일)로 2회 이상 채용을 하는 경우, 첫 번째에 지원하여 전공심사에서 불합격한 지원자가 두 번째에 다시 지원하였을 때, 지원자가 첫 번째 지원 시 제출한 학력·최종학위 논문·연구실적물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해당 지원자는 전공심사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보아 2차전형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14조(경력심사)** ① 경력심사는 각각의 심사위원이 전공심사에서 '적합'으로 평가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9호 서식의 경력심사표에 따라 지원자의 모든 경력을 각각 심사하되, 채용분야와의 적합성 판정결과 심사위원 중 2분의 1 이상이 '적합'으로 판정해야 지원자의 경력이 채용분야와 일치하는 경력으로 본다.

② 경력심사는 산업체경력 자격요건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만을 판정한다.

**제15조(연구실적물 심사)** ① 연구실적물 심사는 각각의 심사위원이 전공심사에서 '적합'으로 평가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10호 서식의 연구실적물 심사표에 따라 연구실적물 심사를 실시한다.

② 연구실적물 심사는 지원자가 제출한 연구실적물(논문, 저서, 특허만 해당)중 채용분야와의 적합성에 대한 심사에서 '적합'으로 판정받은 연구실적물에 한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③ 각각의 연구실적물에 대하여 '부적합'으로 심사한 심사위원 수가 3인 미만인 연구실적물은 최종적으로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점수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④ 연구실적물 심사는 ‘적합’으로 판정된 각각의 연구실적물에 대하여 제 28조제1항의 배분율에 5점을 곱한 후 산출된 점수의 합으로 계산하되, 소수점은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최대 20점까지 인정한다.

⑤ 심사위원은 연구실적물 심사를 함에 있어 동일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연구실적물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적합’으로 평가한다.

**제16조(산학협력실적 심사)** ① 산학협력실적 심사는 각각의 심사위원이 전공심사에서 ‘적합’으로 평가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11호 서식의 산학협력 실적 심사표에 따라 산학협력 실적을 심사한다.

② 산학협력실적 심사는 지원자가 제출한 산학협력 실적서 및 증빙자료로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위원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부여한 2인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하되, 소수점은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7조(2차전형 재심사)** ① 총장은 2차 전형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도의 전형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재심사 결과도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신규임용 전형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재심사는 총장이 위촉한 해당 전공분야 타 대학 전임교원 4인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되, 세부적인 재심사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영어능력 및 공개강의 심사)** ① 2차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영어능력 심사와 공개강의 심사를 실시한다.

② 영어능력 심사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영어강의와 영어질의·응답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해당학부(전공) 전임교원 1인 및 원어민 2인 등 별도의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여 심사한다. 다만, 학부(전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학부(전공) 전임교원을 교내 유사학부(전공) 전임교원 또는 영미언어문화전공 전임교원으로 임명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 영어능력 심사 성적은 S, A, B, C, D 5개 등급의 평균으로 산출하되

항목별 평균을 'C(2점)' 이하로 판정한 심사위원 수가 과반수 인 경우 불합격처리하며, 불합격된 지원자는 향후 전형에서 제외한다.

④ 공개강의 심사는 공개강의심사위원회에서 별지 제14호 서식의 공개강의 심사표에 따라 심사한다.

⑤ 공개강의 심사의 산출 점수는 심사위원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부여한 각 1인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하며, 소수점은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⑥ 영어능력 및 공개강의 심사대상자는 강의주제 및 내용 등을 지정된 기일 내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영어능력 심사 또는 공개강의 심사에 불참할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제19조(영어능력 심사 면제)** 외국(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교육·연구·산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자에게는 영어능력 심사를 면제한다.

1. 외국 대학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2. 기준일 현재 외국에서 전임교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제20조(면접심사)** ① 면접심사는 2차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면접심사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면접심사표에 따라 심사한다.

③ 면접 심사 대상자가 심사에 불참할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④ 성적산출은 면접 심사위원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부여한 각 1인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하되, 소수점은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총장은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제2절 산학협력단 소속 채용 심사절차 및 방법

**제21조(심사절차)** ① 산학협력단 소속 산학협력중점교수 공개채용을 위한 심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 전형: 서류심사
2. 2차 전형: 경력심사, 산학협력 실적 및 활동계획 심사
3. 3차 전형: 공개강의 심사 및 면접 심사

② 심사단계별 전형요소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구분	1차전형	2차전형			3차전형			총 배점
	서류 심사	경력 심사	산학협력 실적심사	산학협력활 동계획심사	영어 능력 심사	공개강의심사	면접 심사	
배점	적부	적부	20	20	Pass/F ail	25	35	100
심사	교무처장	연구실적심사위원회			별도 위원	공개강의 심사위원회	면접심사위 원회	

**제22조(서류심사)** ① 서류심사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서류심사표에 따라 서류 완비 여부, 교수자격 여부, 경력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한다.

② 서류심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자는 2차전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서류심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지원자가 2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향후 전형을 중단한다.

**제23조(경력심사)** ① 경력심사는 1차전형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지원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9호 서식의 경력심사표에 따라 연구실적 심사위원이 지원자의 모든 경력을 각각 심사하되, 채용분야와의 적합성 판정결과 심사위원 중 2분의 1 이상이 ‘적합’으로 판정해야 지원자의 경력이 채용분야와 일치하는 경력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력에 대하여 임원여부를 심사하되, 심사위원 중 2분의 1 이상이 ‘적합’으로 판정해야 임원 경력으로 본다.

③ 경력심사는 산업체경력 자격요건 및 임원경력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적합’으로 판정하며, 1가지 요건이 미충족시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제24조(산학협력실적 심사)** ① 산학협력실적 심사는 각각의 심사위원이 경력심사에서 ‘적합’으로 평가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11호 서식의 산학협력 실적 심사표에 따라 산학협력 실적을 심사한다.

② 산학협력실적 심사는 지원자가 제출한 산학협력 실적서 및 증빙자료

로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위원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부여한 2명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하되, 소수점은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25조(산학협력 활동계획 심사)** ① 산학협력 활동계획 심사는 각각의 심사위원이 경력심사에서 ‘적합’으로 평가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12호 서식의 산학협력 활동계획 심사표에 따라 산학협력 활동계획을 심사한다.

② 산학협력 활동계획 심사는 지원자가 제출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산학협력 활동계획서로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위원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부여한 2명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하되, 소수점은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26조(2차전형 재심사)** ① 총장은 2차 전형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도의 전형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재심사 결과도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신규임용 전형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재심사는 총장이 위촉한 해당 전공분야 타 대학 전임교원 4인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되, 세부적인 재심사 절차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7조(영어능력 및 공개강의 심사)** ① 2차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영어능력 심사와 공개강의 심사를 실시한다.

② 영어능력 심사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영어강의와 영어질의·응답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해당학부(전공) 전임교원 1인 및 원어민 2인 등 별도의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여 심사한다. 다만, 학부(전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학부(전공) 전임교원을 교내 유사학부(전공) 전임교원 또는 영미언어문화전공 전임교원으로 임명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 영어능력 심사 성적은 S, A, B, C, D 5개 등급의 평균으로 산출하되 항목별 평균을 ‘C(2점)’ 이하로 판정한 심사위원 수가 과반수 인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불합격된 지원자는 향후 전형에서 제외한다.

④ 공개강의 심사는 공개강의심사위원회에서 별지 제14호 서식의 공개강의

심사표에 따라 심사한다.

⑤ 공개강의 심사의 산출 점수는 심사위원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부여한 각 1인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하되, 소수점은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⑥ 영어능력 및 공개강의 심사대상자는 강의주제 및 내용 등을 지정된 기일 내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영어능력 심사 또는 공개강의 심사에 불참할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제28조(영어능력 심사 면제)** 외국(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교육·연구·산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자에게는 영어능력 심사를 면제한다.

1. 외국 대학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2. 기준일 현재 외국에서 전임교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제29조(면접심사)** ① 면접심사는 2차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면접심사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면접심사표에 따라 심사한다.

③ 면접 심사 대상자가 심사에 불참할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④ 성적산출은 면접 심사위원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부여한 각 1인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하되, 소수점은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총장은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제3절 연구실적물

**제30조(연구실적물 인정범위)**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월간, 일간지 등의 잡지 및 신문에 발표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1. ISBN(국제표준도서번호)이 있는 단행본 출판물 (편저, 역서, 서평, 학회지, 학술대회 발표 논문, 참고서, 수험서, 문제집,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제외)

2. 주저자로 참여한 SCIE, SSCI, A&HCI, SCOPUS 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 또는 등재후보학술지 게재 논문(공동저자 미인정)
3. 특허 : 등록되어 특허증서가 발급된 것에 한함(출원 미인정)
4. 산학협력연구보고서: 계약서 사본 및 최종 연구보고서가 있는 실적만 인정

**제31조(연구실적물의 배분율 및 인정률)** ① 연구실적물의 배분율은 다음과 같다.

1. 저서 및 특허:  $1/n$  (n: 저자수, 연구자수)
2. 논문:  $2/(n+1)$  (n: 저자수)
3. 산학협력연구보고서:  $2/(n+1)$  (n: 최종연구보고서 기준 총 연구자수)

② 연구실적물의 인정률은 제1항에 100%를 곱하여 산출하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4장 합격자 결정

**제32조(2차전형 합격자)** ① 2차전형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2차전형 합격자를 결정하며, 합격자 수는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의 5배수로 한다.

②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부(전공) 및 대학원 소속 산학협력중점교수는 특허 점수, 산학협력 실적서 점수, 산업체 경력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산학협력단 소속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 소속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우 2차전형 심사 시 심사위원 2분의 1 이상이 2개 항목 이상에 “미흡” 이하로 심사하거나 심사위원 2분의 1 이상이 1개 항목 이상에 “매우 미흡”으로 심사한 경우에는 상위 5배수에 해당하더라도 불합격 처리한다.

④ 2차전형 합격자가 5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자 전원을 합격자로 처리

하되, 2차전형 합격자가 1명인 경우에는 향후 전형을 중지한다.

**제33조(최종합격 후보자)** ① 교무처장은 2차전형과 3차전형 점수 합산 결과 70점 이상인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로 등위를 표시하지 않고 2명까지 총장에게 추천한다.

② 점수 합산 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때에는 면접 심사, 공개강의 심사 및 산학협력 실적 점수 순으로 결정한다.

**제34조(최종합격자)** ① 총장은 교무처장이 추천한 최종합격 후보자 중 1명을 선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은 후보자 전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심사가 불합리 또는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총장은 차순위자를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용할 수 있다. 차순위자라 함은 최종합격 후보자 중 최종합격자 선정에서 제외된 자를 말한다.

③ 최종합격자라도 학·경력 조회나 지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조회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하고, 향후 우리 대학에서 실시하는 교수채용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며 지원하더라도 자격을 박탈한다.

**제35조(임용예정자의 직명 결정)** ① 임용예정자의 직명은 원칙적으로 조교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 취득 후 교육 및 연구 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기본 자격을 석사학위 이상으로 공고하여 채용된 사람이 석사학위 취득 후 교육 및 연구경력이 20년 이상인 경우 또는 다른 4년제 대학 전임교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부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직명 결정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36조(임용계약서 작성)** 신규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에 따라 계약제 임용을 원칙으로 하며, 총장과

임용예정자는 임용 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임용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 제5장 공개 등

**제37조(공개)** 공개채용에 지원한 사람이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대하여 공개를 요청할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신규임용 제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에 따라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교수채용지원위원회)** ① 공개채용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교수채용지원위원회를 둔다.

② 교수채용지원위원회는 교무처장, 대학원장 및 학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③ 교수채용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심사 단계별 채용 업무의 객관성 및 공정성 심의가 필요한 경우
2. 심사과정에서 지침 적용에 필요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0조(준용)**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경국립대학교 전임교원 공개채용 전형지침에 따른다.

이 지침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 3. 30.>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 5. 16.>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산학협력중점교수 공개채용 지원서

< 한경국립대학교 전임교원(산학협력중점교수) 공개채용 >

### I. 서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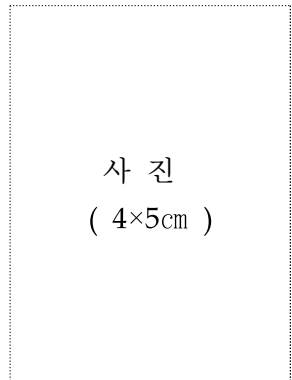
본인은 한경국립대학교 ( 20XX학년도 X학기 ) 산학협력중점교수(전임교원) 공개채용에 지원하면서 아래의 사항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추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의 취소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

지원자 : (인)

### II. 이력서

채용분야		접수번호	* 미기재
<b>1. 인적사항</b>			
주 소	우( - )		
성 명	(한글)	(한자 )	
생년월일			
E-mail			
연 락 처	(주택) (사무실) (휴대전화)		



※ 주소는 연락이 가능한 실 거주지를 기재함.

### 2. 학 력

구분	학교명	학교 소재지	학과명	전 공	수학기간	학 위 취득일	학위명
학사					~		
석사					~		
박사					~		

※ 동일한 학위를 2종류 이상 취득한 경우는 칸을 추가하여 사용. 수학기간은 날짜까지 기재함.

3. 교육경력(초·중·고 교사, 시간강사, 조교, 교수 등의 경력)

근무기관	재직기간	주당 담당시간수	직명(직위)	담당직무

※ 시간강사의 경우 학기별로 근무기관이 2개 기관 이상이면 주당 담당 시간수를 합산하여 기재함.

※ 칸이 부족한 경우 칸을 추가하여 사용. 재직기간은 날짜까지 기재함.

4. 연구경력(연구소 근무경력)

연구기관명	기간	직명(직위)	연구수행사항

※ 석·박사 연구경력만 제외 후 작성함.

※ 칸이 부족한 경우 칸을 추가하여 사용. 기간은 날짜까지 기재함.

5. 산업체 등 경력

근무기관명	기간	직명(직위)	근무부서명	담당직무

※ 칸이 부족한 경우 칸을 복사하여 사용. 기간은 날짜까지 기재함.

6. 채용분야와 관련된 수상경력 (석사학위 취득 이후)

수상기관	수상종류	수상년월일

### 7. 군복무 사항

역종별	군 별	계 급	입대연월일	제대연월일

※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경우는 역종별에 “미필”이라고 기재하며,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함. 군복무 중인 경우는 “입대연월일”란에 입대연월일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복무 중”이라고 기재함.

### 8. 강의가 가능한 외국어

순 위	외 국 어	구 분	
		상	중

### III. 교육공무원 지원 결격 여부

항목	본인 해당여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본인 해당여부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 있으면 “○”로 표기함.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Ⅱ-2)

한경국립대학교 귀중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하며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1) 수집 · 이용 목적

- (주된목적)
- (부수목적)

(2) 수집정보

- (필수정보)
- (선택정보)

(3) 보유 · 이용기간

-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동의 철회시까지
- 다만, 한경국립대학교가 정한 보유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종료시까지

(4) 동의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 선택정보의 수집 · 이용에 동의하지 않아도 에 제한이 없음

◆ 개인정보(필수정보)의 수집 · 이용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선택정보)의 수집 · 이용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

(1) 고유식별정보 항목 :

(2) 수집 · 이용 목적 :

◆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 :  동의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의 법정 대리인 (인/서명)

※ 첨부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Ⅲ-1)

한경국립대학교 귀중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하며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1) 수집 · 이용 목적

- (주된목적)
- (부수목적)

(2) 수집정보

- (필수정보)
- (선택정보)

(3) 보유 · 이용기간

-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동의 철회시까지
- 다만, 한경국립대학교가 정한 보유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종료시까지

(4) 동의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 선택정보의 수집 · 이용에 동의하지 않아도 에 제한이 없음

◆ 개인정보(필수정보)의 수집 · 이용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선택정보)의 수집 · 이용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

(1) 고유식별정보 항목 :

(2) 수집 · 이용 목적 :

◆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3. 민감정보 수집 · 이용

(1) 민감정보 항목 :

(2) 수집 · 이용 목적 :

◆ 민감정보 수집 · 이용 :  동의  동의하지 않음

성명 : 년    월    일  
(인/서명)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Ⅲ-2)

한경국립대학교 귀중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하며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1) 수집 · 이용 목적

- (주된목적)
- (부수목적)

(2) 수집정보

- (필수정보)
- (선택정보)

(3) 보유 · 이용기간

-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동의 철회시까지
- 다만, 한경국립대학교가 정한 보유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종료시까지

(4) 동의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 선택정보의 수집 · 이용에 동의하지 않아도 에 제한이 없음

◆ 개인정보(필수정보)의 수집 · 이용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선택정보)의 수집 · 이용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

(1) 고유식별정보 항목 :

(2) 수집 · 이용 목적 :

◆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3. 민감정보 수집 · 이용

(1) 민감정보 항목 :

(2) 수집 · 이용 목적 :

◆ 민감정보 수집 · 이용 :  동의  동의하지 않음

성명 : \_\_\_\_\_ 년 월 일  
의 법정 대리인 (인/서명)

※ 첨부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별지 제2호 서식]

## 자기소개서

채용분야		성명	(인)
------	--	----	-----

자기소개 (간략하고 명료하게 작성)

- ※ A4용지 2매 이내에서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글자는 휴먼명조체 12포인트, 줄 간격은 160%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 후 산학협력 활동계획서

채용분야		성명	
<b>1. 산학협력 교육분야 활동계획</b>			
<b>2. 산학협력 연구분야 활동계획</b>			
<b>3. 산학협력 봉사분야 활동계획</b>			
<p>임용 후 우리대학 산학협력의 분야별 활동 계획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2차전형 심사 시 심사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하고 자세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p>			

※ 분야별로 A4 용지 3매 이내에서 자유롭게 (그림, 도표 등 가능)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글자는 휴먼명조체 12포인트, 줄 간격은 160%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1호 서식]

## 산학협력 실적서(학부(전공) 및 대학원 소속 교원 작성)

채용분야		성명	(인)
------	--	----	-----

번호	항목	실적	비고 (증빙자료)
1	기술협력 (기술지도, 기술자문, 기술이전 등 실적)		객관적 증빙 서류
2	창업지원 (본인 및 타인의 창업지원 실적)		“
3	취업지원 (타인의 취업지원 실적 등)		“
4	그 밖에 산학협력 관련 실적		“

※ 산학협력 실적은 최근 5년 내 실적만 인정되며, “실적” 란은 해당 항목에 대하여 심사위원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활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산학협력 실적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실적에서 제외)

[별지 제4-2호 서식]

## 산학협력 실적서(산학협력단 소속 교원 작성)

채용분야		성명	(인)
------	--	----	-----

번호	항목	실적	비고 (증빙자료)
1	산학협력 연구개발(용역, 과제) 실적		계약서 사본 및 연구보고서 등
2	특허		특허증 사본 및 공보
3	기술협력 (기술지도, 기술자문, 기술이전 등 실적)		객관적 증빙 서류
4	창업지원 (본인 및 타인의 창업지원 실적)		“
5	취업지원 (타인의 취업지원 실적 등)		“
6	그 밖에 산학협력 관련 실적		“

※ 산학협력 실적은 최근 5년 내 실적만 인정되며, “실적” 란은 해당 항목에 대하여 심사위원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활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산학협력 실적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실적에서 제외)

[별지 제5호 서식]

## 연구실적물 목록

채용분야		성 명							(인)
순 위	구분 1)	제 목	발 표 연월일	발표지명	저자수 <sup>2)</sup>	인정률 <sup>3)</sup>	영향 지수 <sup>4)</sup>	ISSN (ISBN) 5)	공동저자명 <sup>6)</sup> (지도교수 및 논문심사 위원명)
	석사								
	박사								
1									
2									
3									
4									
5									
6									
7									

- 1) 구분 : 국제학술논문의 경우 “SCIE, SSCI, A&HCI, SCOPUS”중 해당사항 기재, 연구재단 등재학술지는 “등재”, 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는 “등재후보”로 기재하시고, 저서는 “저서”, 특허는 “특허”, 산학협력연구보고서는 “보고서”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2) 저자수 : 본인을 포함한 모든 인원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3) 인정률 : 지침 제28조 제2항에 따라 연구실적물에 대한 인정률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4) 영향지수 : 논문이 게재된 해당년도 SCIE, SSCI, A&HCI 학술지 논문의 Impact Factor(IF)를 기재하되, 영향지수가 발표되지 않은 최근 게재논문은 직전년도의 IF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IF가 없는 최근 학술지의 경우에는 ‘미발표’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5) ISSN(ISBN) : 논문의 ISSN 또는 저서의 ISBN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6) 공동저자명 : 석·박사 논문의 경우 지도교수 및 논문 심사위원 성명을, 논문·저서·특허·보고서 의 경우 공동저자(연구자) 명을 모두 기재(한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외국인 지도교수 및 외국인 공동저자는 작성에서 제외)

[별지 제6호 서식]

### 연구실적물 요약서

채용분야		성명	(인)
------	--	----	-----

순위	구분	제목	
발표연월일		발표지명	연구자수

< 연구요약 >

- 1) 순위·구분 및 제목 : “별지 제5호 서식” 연구실적물 목록에 작성한 실적물의 순위·구분 및 제목과 동일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2) 연구실적물 요약서는 목록에 작성한 전체 실적물(석·박사 논문도 포함)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실적물당 1page로 요약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글자는 휴면명조체 12포인트, 줄 간격은 160%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호 서식]

## 서류심사표

### 1. 인적사항

응시자	채용분야		학 력	구분	대학	학과
	응시번호			학사		
	성 명			석사		
	생년월일			박사		

### 2. 서류심사 결과

심사항목	심사내용	합격기준	지원자	적부판정
서류심사	1. 지원서	제출여부		
	2. 자기소개서 및 임용 후 산학협력 활동계획서	"		
	3. 학력 및 성적증명서(학석박사)	"		
	4. 경력증명서	"		
	5. 연구실적물 목록 및 요약서	"		
	6. 연구실적물	"		
	7. 기타 추가 제출서류	"		
자격심사	1. 자격 결격(국공법 33조,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교수자격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1)	결격 無		
	2. 학위	소지여부		
	3. 산업체 경력 (학부(전공) 소속 10년 이상, 산학협력단 소속 20년이상)	충족여부		
연구실적 물심사	1. 최근 3년간 연구실적물 제출 실적 (석박사논문 제외) - 학부(전공) 소속 교원 해당	200%이상		
	2. 최근 5년간 특허 또는 산학협력연구보고서 실적 (학부(전공) 소속 교원만 해당)	50%이상		
1차 전형 적합 여부				

20    년    월    일

1차 심사	
작성자	(인)
확인자	(인)
확인자	(인)

2차 심사	
작성자	(인)
확인자	(인)
확인자	(인)

[별지 제8호 서식]

## 전공심사표 (학부(전공) 및 대학원 소속 교원 심사용)

### 1. 인적사항

응시자	채용분야		학 력	구분	대학	학과
	응시번호			학사		
	성 명			석사		
	생년월일			박사		

### 2. 전공적부 심사 결과

전 공 심 사	심사항목	일치	유사	불일치	점수	비 고
	학사 학위 과정	2	1	0		
	석사 학위 과정	2	1	0		
	박사 학위 과정	2	1	0		
	최종 학위논문	2	1	0		
	경력	2	1	0		
	합계					

- 1) 학위과정 : 채용분야와 일치여부를 성적증명서의 이수과목과 담당교과목을 참조하여 심사하며, 석사, 박사 통합과정 학위 취득 시 상기 부여점수를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 2) 최종 학위논문 및 경력 : 지원자가 작성한 최종 학위논문 요약서 및 경력증명서를 참고하여 심사합니다.

※ 불일치로 판정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사유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소속

성명

(인)

## 경력심사표

### 1. 인적사항

채용분야		응시번호		성명	
------	--	------	--	----	--

### 2. 경력심사 결과

구분	경력년수	요건	충족여부 (○,×)	최종판정 (적·부)
산업체경력	년 월 일	산업체경력		
		임원경력		

### 3. 경력심사 평정표

번호	경력구분	근무기관명	담당직무	근무기간	경력인정 여부(○,×)	임원인정 여부(○,×)	제외사유
1	석사						
2	박사						
3							
4							
5							
6							
합계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0호 서식]

## 연구실적물 심사표 (학부(전공) 및 대학원 소속 교원 심사용)

### 1. 인적사항

채용분야		응시번호		성명	
------	--	------	--	----	--

### 2. 연구실적물 평가 결과

연번	구분	발표제목	발표지명	저자수	역할	인정률	양 평가	비고
							적부(O,X)	
1								
2								
3								
4								
5								
6								
7								

※ 양 평가 “적부(O, X)” : 채용분야와 연구실적물과의 적합성 여부를 “O”, “X”로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고” 란에는 부적합(x)으로 평가한 사유를 간단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소속

성명

(인)

## 산학협력 실적 심사표

1. 인적사항

채용분야		응시번호		성명	
------	--	------	--	----	--

2. 산학협력 실적 심사결과

심사항목	평가점수					평가의견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실적의 우수성 (질적 수준)	10	8	6	4	2	
실적의 다양성 (양적 수준)	5	4	3	2	1	
본교 활용 가능성 (본교 기여도)	5	4	3	2	1	
소 계						합 계 :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성명:

(인)

## 산학협력 활동계획 심사표 (산학협력단 소속 교원 심사용)

1. 인적사항

채용분야		응시번호		성명	
------	--	------	--	----	--

2. 산학협력 계획 심사결과

심사항목	평 가 점 수					평가의견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계획의 우수성 (질적 수준)	10	8	6	4	2	
계획의 다양성 (양적 수준)	5	4	3	2	1	
본교 활용 가능성 (본교 기여도)	5	4	3	2	1	
소 계						합계 :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성 명:                      (인)

[별지 제13호 서식]

## 영어능력 심사표

### 1. 인적사항

채용분야		응시번호		성명	
------	--	------	--	----	--

### 2. 심사 결과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가의견
	S	A	B	C	D	
	5	4	3	2	1	
영어 강의						
영어 질의·응답						
심사결과	( '합격' 또는 '불합격' )					

※ 심사결과 항목별 평균이 'C(2점)' 이하로 판정한 심사위원이 과반수 인 경우 불합격 처리됨.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성명:

(인)

## 공개강의 심사표

### 1. 인적사항

채용분야		응시번호		성명	
------	--	------	--	----	--

### 2. 공개강의 심사 결과

심사항목	평가점수				평가의견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강의준비도	4	3	2	1	
강의방법 및 태도 (전문지식)	8	7	6	5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발표력)	5	4	3	2	
산학협력 계획 및 실적 내용의 우수성	8	7	6	5	
소 계					합 계 :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성명:

(인)

## 면접 심사표

1. 인적사항

채용분야		응시번호		성명	
------	--	------	--	----	--

2. 면접심사 결과

심사항목	평가점수				평가의견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1.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성	8	7	6	5	
2. 교육자로서의 사명감과 자질	9	8	7	6	
3. 임용 후 활동계획 (우리대학 발전 기여도)	9	8	7	6	
4. 교수로서 발전 가능성	9	8	7	6	
소 계					합 계 :
면접의견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성명:

(인)

[별지 제16호 서식]

## 전임교원 임용 계약서

「교육공무원법」 제25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중점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권자인 한경국립대학교 총장을 “갑”이라 하고, 임용예정자를 “을”이라 하여 상호 합의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계약당사자)

(갑) 한경국립대학교 총장

(을)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제2조(계약기간) 임용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년으로 한다.

제3조(소속 및 계약직급) ① “을”의 소속은 (으)로 한다.  
② “을”의 계약직급은 로 한다.

제4조(보수 및 연구비지급 등) ① “갑”은 “을”에게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보수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한다.  
② “갑”은 “을”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연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임무 등) ① “을”은 계약기간 동안 주당 강의시간, 학술 연구활동, 학사업무 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및 우리대학 각종 규정(「학칙」, 「한경국립대학교 전임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 「한경국립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기간 중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우리대학 교육 시책 및 대학 발전에 적극 협조함은 물론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산학협력 대학정책 개발 및 제안,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동향분석 및 제고, 산학협력사업 개발 및 참여, 이술이전 지도, 학생 현장실습을 통한 산학협력교육, 학생 취업지도 등의 산학협력활동에 전념하여야 하며, 다른 대학 출강 등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 채용 목적 외 활동은 할 수 없다.

제6조(성과급적 연봉제) ① “을”은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 등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으며, 임용일이 속하는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에 최초 업적평가를 실시한다.

② 업적평가는 「한경국립대학교 전임교원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교육·연구/산학협력·봉사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업적평가 결과 및 「한경국립대학교 성과급적연봉제 운영 규정」에 따라 성과 연봉을 지급한다.

**제7조(승진 및 재임용)** ① “을”은 승진 최저 소요기간 도달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 「한경국립대학교 전임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진 또는 재임용할 수 있다.

② 승진 및 재임용 심사에 필요한 업적평가 점수는 「한경국립대학교 전임교원 업적평가 규정」에 따른다.

③ “을”은 계약기간 종료 4개월 전까지 현직급 계약기간 동안 수행한 소정의 업(실)적 증명서를 첨부하여 재임용(이하 “재계약”이라 한다) 신청을 하여야 하며, “갑”은 제출된 업(실)적을 심사한 후, “을”에게 계약기간 종료 2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통보한다.

④ “을”이 최초 임용 후 첫 번째 재계약에서 누락(탈락)된 때에는 재계약 누락(탈락) 결정이 난 달이 속하는 학기 말일에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

⑤ “을”이 “갑”과 재계약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달이 속하는 학기 말일에 자동적으로 퇴직한다.

**제8조(이의신청 및 조정)** ① “을”은 재계약 통보서 도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갑”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갑”은 이의신청 시 동 내용을 교원인사위원회에 심의 요청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을”에게 통보한다.

③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을”의 신청이 “이유있음”으로 가결하였을 경우 “을”은 이의신청 결과통보서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교원인사위원회는 필요 시 또는 “을”의 요청에 의하여 “을”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
2. 계약기간 중 법령, 규정 또는 계약에 따른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거나 제5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신체·정신상의 이유로 강의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임용 시 제출한 각종 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물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10조(기타)** ① “을”은 계약기간 중 교육공무원으로서 신분상의 권리를 가지며, 맡은 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